

##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입 학

제 2 조(입학지원)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5.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5.10.01.>

제 3 조(합격자 결정) 합격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 4 조(입학등록) 입학전형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 제 3 장 개강, 수강,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

제 5 조(강좌개설) ① 각 전공의 주임교수는 강좌개설학기의 2개월 전에 강좌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개강한다. 단,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③ 동일과목은 2학기 연속으로 개설할 수 없다.

④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은 공개강좌 및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제 6 조(수강신청) 수강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일주일전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이 종합전산망을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 7 조(학점취득) ① 학생이 재적하는 전공이 아닌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개정 2017.09.01.>

제 8 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입학 후 1학기에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전공의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01.>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본교의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선정한다.<개정 2012. 6. 4>

④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 할수 있으며 그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제 9 조(논문연구) ① 논문연구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② 논문연구는 석사학위과정의 최종학기에 이수한다.

## 제 4 장 재입학, 등록, 휴복학 및 퇴학

제 10 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매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4학기 이상 이수자중 3학점 이하 신청자는 등록금의 1/2을, 4학점이상 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병역, 임신·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6. 4, 2018.09.01.>

②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 13 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대복학자

#### 4-2-2-4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는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기타 복학자는 소정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 14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편입학) ①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편입학한 학생은 본교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제 16 조(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매년 학기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며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 17 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한다. <개정 2017.09.01.>

제 18 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담당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제 20 조(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중 응시자가 1종을 선택한다.

②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디자인학전공의 경우는 작품발표(3인 이내) 또는 공인학회(3인 이내)의 심사논문게재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1 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는 TOEIC 700점, TOEFL 500점 이상 취득자, 일어는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자, 불어는 DELF 2급 이상 취득자, 독어는 ZD 중급 이

상 취득자, 중국어는 H.S.K5급 이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단, 외국어시험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제 22 조(결과보고) 대학원위원회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여부를 심의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 23 조(유효기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각 과정별 논문 제출시한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2-6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6학년도 입학생 및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원학사운영규정 2018.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①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을 ‘학생이 질병, 병역, 임신·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이상’ 으 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를 ‘제1항의 사유로’ 로 한다.
- ② (생략)